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침해구제제1위원회

### 결 정

사 건 20진정0662700·20진정0662701·20진정0667400·20진정0671300·21진정0160400·21진정0160500(병합) 경찰의 부당한 1인 시위 제한

진 정 인 1. ○○○

2. ○○○

3. ○○○

피 해 자 1. ○○○

2. ○○○

3. ○○○

피진정인 1. ○○○

2. ○○○

3. ○○○

4. ○○○

### 주 문

1. 외교공관 인접장소에서 부당하게 1인 시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피해자 1의 이격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외교공관 인근을 경비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정당활동 방해 등)은 기각합니다.

## 이 유

###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1, 2, 3은 각각 다른 일시에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중에 이곳을 교대하여 경비하는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1) 피해자 1은 2020. 9. 16.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해자 1을 폭력적으로 이격하였다.

2) 피해자 1은 2020. 10. 1.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나,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을 밀치고 수차례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 1이 항의하자 현장 책임자로 보이는 경찰관이 추석에 너무 그러지 말라며 비아냥거렸다.

3) 피해자 2는 2021. 2. 14.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진정인 3을 포함한 여자 경찰관 여러 명이 동의 없이 양팔과 몸을 붙잡으며 강제로 끌어냈다. 이에 피해자 2가 피진정인 3에게 놓아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더럽다”고 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귀가 안 좋으니 병원에 가보라”며 비아냥거렸다.

4) 피해자 3은 2021. 3. 16. ○○구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진정인 4를 포함한 경찰관 여러 명이 동의 없이 양팔과 몸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3은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1 소속 ○○○○당은 2020. 9. 20. 반대세력의 방해와 경찰관들의 방관에도 불구하고 ○○로에서 짧은 정당연설회를 진행하였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정당연설회임에도 경찰관들은 피해자 1 등을 보호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이격하며 정당활동을 방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1은 경찰관들에 밀려 넘어져 몸이 눌리기도 하였다.

## 2. 당사자 주장

###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대사관 앞 1인 시위가 발생할 경우, 비엔나 협약에 따라 이동조치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고, 20~30분 정도 의견표출 시간을 보장한 후 ○○대사관으로부터 약15m 떨어진 ○○북측으로 이동조치 하여 1인 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공관의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대사관 최근접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1인 시위는 외교사절 및 외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위험성이 있다.

정당연설회는 정당이 유세나 후보자 지지·추천·반대 없이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정당 활동임을 명목으로 하더라도 구호제창 등으로 모임 자체의 위세를 과시하여 특정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시위에 해당할 수 있다.

###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지구대 내 CCTV녹화영상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 관련 1인 시위 및 이격조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1은 ○○○○당 소속 당원으로, 2020. 9. 16.경 같은 당 소속 당원과 동행하여 ○○대사관 정문 방향 ○○건물 맞은편 모퉁이에 위치하여 준비한 피켓을 펼치고 1인 시위를 하였고, 동행한 당원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1의 1인 시위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경찰관들에 의하여 이격조치 되었다.

2) 피해자 1은 2020. 10. 1. 11:00경 같은 당 소속 당원과 동행하여 ○○대사관 정문 방향 ○○건물 맞은편 모퉁이에 위치하여 준비한 피켓을 펼치고 1인 시위하였고, 동행한 당원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1의 1인 시위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해자 1은 2020. 10. 1. ‘○○ 철거시위 1535일째, 북침전쟁연습 영

구중단! ○○워킹그룹 즉각해체! ○○철거! 구호가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대사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진정인 2가 다가가 피해자 1의 등을 횡단보도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1이 20여 초간 버티자, 지원요청을 받은 추가경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1의 등 쪽에서 피해자 1을 잡았으며, 피진정인 2는 오른쪽 팔로 피해자 1의 목을 휘감은 후 왼쪽 팔로 결박하였다.

4) 피해자 1이 횡단보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성으로 “어디서 목을 졸라”라고 하자,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의 목을 감고 있던 손을 풀었으나, 잠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 1의 목 뒤를 붙잡은 채로 왼손 팔뚝 부위로 목 부위를 10초가량 누른 후 어깨부위 옷을 잡아 ○○건물 방향으로 끌고 갔다.

나. 피해자 2 관련 1인 시위 및 이격조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2는 ○○○○당 소속 당원으로, 2021. 2. 14. 경 같은 당 소속 당원 1인과 동행하여 ○○대사관 정문 방향 ○○건물 맞은편 모퉁이에 위치하여 준비한 피켓을 펼치고 1인 시위하였고, 동행한 당원은 피해자 2의 1인 시위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2는 ‘○○철거시위 1671일째, 북침전쟁연습영구중단! ○○워킹그룹즉각해체! ○○철거!’ 구호가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대사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진정인 3 등이 피해자 2의 양쪽 팔짱을 끼고 횡단보도를 건너 ○○건물 방향 쪽으로 이동하였다.

3) ○○건물 앞에서 피해자 2가 계속 끌고 가려는 피진정인 3에게 ‘이미 이격한 것 아니냐, 그만하고 놓아 달라’고 요청하자, 피진정인 3 등 경찰관들은 피해자 2의 양 팔을 놓아 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는 피진정인 2가 ‘더러워’라고 발언했다면서 항의하고, 피진정인 2는 ‘힘들다’고 했으며

실랑이하는 가운데, 피진정인 3이 '병원에 가서야겠어요, 귀가 안 들리시는 데'라고 발언하였다.

다. 피해자 3 관련 1인 시위 및 이격조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3은 ○○○○당 소속 당원으로, 2021. 3. 16. 경 같은 당 소속 당원 1인과 동행하여 ○○대사관 정문 방향 ○○건물 맞은편 모퉁이에 위치하여 준비한 피켓을 펼치고 1인 시위하였고, 동행한 당원은 피해자 3의 1인 시위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3은 '○○철거시위 1701일째, 북침전쟁연습영구중단! ○○위킹그룹즉각해체! ○○철거!' 구호가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대사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진정인 4 등이 피해자 3의 양쪽 팔짱을 끼고 ○○건물 방향 쪽으로 이동하였다.

3) ○○건물 앞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3은 이격조치 하는 경찰관들의 다리에 걸려 경찰관들과 함께 넘어졌으나, 다른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4) 이후 피진정인 4 등 경찰관들은 다시 피해자 3의 양 팔을 잡은 후 ○○건물 입구 앞까지 끌고 간 후 풀어주었다.

##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1인 시위 제한 등)

### 1) 판단기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1항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

주사회의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 내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을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다.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서 하는 시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상 집회와 시위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의 다수를 요하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소수자의 사회적·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1인 시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형된 형태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로서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1인 시위가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수성, 공동의 목적여부, 장소적·시간적 근접성 등을 적용하여 판단하되 이러한 기준 충족여부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1인 시위자 옆에 다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시위현장에 머물렀더라도, 그것이 시위자를 조력함에 불과하고 다중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집시법상의 집회로 볼 수 없다. 만일 단순히 2인 이상이 동일 시간에 동일 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간주하게 된다면, 집시법 적용을 피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 온 시민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 이 사건 1인 시위의 집시법 해당 여부

이상의 기준에 입각하여 이 사건 1인 시위를 살펴본다. 사건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는 1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면 동행인 1명이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는 등 조력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이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신의 의견 전파를 극대화하기 위해 변형된 1인 시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형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이 사건 강제 이격조치 행위의 적법성 여부 등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내 ○○건물 앞까지 이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진정인들이 “더럽다”, “추석에 너무 그러지 말라”, “귀가 안 좋으니 병원에 가보라”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더럽다”는 발언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외 발언은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인권침해에 이른 경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 사건 이격조치의 인권침해 여부인바, 이에 대해 피진정인 측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상 즉시강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해당 여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함) 제22조제 2호는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29 조는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협약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에게 외교공관과 직원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에게 외교공관과 직원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례와 같이 별다른 물리적 위협이나 위력 등을 보이지 않음에도 단지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위험한 사태의 발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작성한 피켓내용을 보더라도 ‘북침전쟁연습영구중단!, ○○워킹그룹 즉각해체!, ○○철거!’ 등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해외공관의 안녕과 직원들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줄 만한 부적절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바, 피진정인들에게 피해자들의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적극적인 강제이격 조치를 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별지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외교공관 인접 장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도, 공공의 안전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 대한 1인 시위는 물론이고 집회를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는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조치라는 피진정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해당 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물리력 사용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1인 시위의 위험성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뿐 다중의 위력이나 기세를 내비치는 행위가 아니었고, 1인 시위 과정 중에 위해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을 강제 이격조치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의 목을 결박하고 목을 누르는 행위를 한 부분 등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피해자 1의 완강한 저항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라는 피진정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들은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내면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표현의 자유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1인 시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제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연유하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피해자 1의 이격과정에서 과도한 물리

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외교공관 인근을 경비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1인 시위의 보장과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 사건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경비정책과 관행의 변화는 경찰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나. 진정요지 나항(정당활동 제한) 관련

피해자 1은 경찰이 2020 9. 20. ○○○○당이 정당연설회를 진행하였으나 보호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이격하여 정당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1 소속 ○○○○당은 사건 당일 현장 인근에 집회 신고를 하였다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금지통고 된 것이 확인되고, 달리 당시 상황이 불법집회가 아닌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나, 집회해산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리력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22.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임 성 택

위    원    석 원 정

## <별지 1>

### 관련 규정

#### 1.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법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2>

외국공관 인접장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해외사례

< 외교부, 2021. 5. 11. 기준 >

국가명	관련규정	외국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및 집회가능 여부	비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으며, 외국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법령 부재</li> <li>○ 다만, 연방법에 외국공관원 등의 보호를 위해 외국공관 인근(약 30m 이내)에서 외국공관원에 대해 위협 등을 할 경우 처벌규정 존재</li> <li>○ 또한, 워싱턴 D.C를 포함해 각 주별로 집회 및 시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및 승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시위 및 집회 가능</li> <li>○ 워싱턴 D.C. 법에 따르면 도로, 인도 등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경우, 사전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로서 ①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②예상 참석 인원이 50명 미만이고 도로가 아닌 경우 ③공적인 사건에 대한 즉각적·즉흥적 의견표출 목적인 경우 사전 신고 및 승인 불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관계당국은 시위 종료 시까지 공관 주변에 지원인력 및 경찰차량 배치</li> <li>-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으로 이어지거나 보행자의 안전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제지</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이 아닌 지자체 조례로 집회 및 시위 관련 사항을 규제·관리</li> <li>- 동경 경시청 경우「집회, 집단행진 및 집단시위 운동에 관한 조례」로 관리(집회 신고, 집회·시위 허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시위 및 집회 가능</li> <li>○ 외국공관 인접 지역에서의 1인 시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직무질문, 제5조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근거하여 제한 가능</li> <li>○ 「국회의사장 등 주변지역 및 외국공관 등 주변지역에서의 정숙 유지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공관 주변에서 확성기 사용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주일대한민국대사관 정문 출입구 앞 도로 전방에서 소규모(3~5인) 및 1인 시위 빈번 개최</li> <li>- 2021년 1~4월간 총 30회(이중 1인 시위는 6회)</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공관을 집회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은 없음</li> <li>○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상 2명 이상 인원의 집회는 제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시위 및 다수인 집회 가능</li> <li>○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상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인원이 하는 집회가 공공질서 및 재산상 손실, 공동체 생활 위협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은 집회 장소·참여 인원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등 제한할 수 있음</li> <li>- 특히, 행진이 공공질서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내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월 현재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6인 초과 참여 집회의 경우 주최자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도 등을 평가하는 risk assessment를 경찰에 제</li> </ul>

		<p>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지할 수도 있음</p> <p>※ 집회의 경우 경찰에 사전 신고 의무는 없으나 행진의 경우 6일전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신고하여야 함</p> <p>○ 형사법(Criminal Law Act 1967)에 따라 공관 출입구를 막는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이동시키거나 제한하는 등 경찰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체포도 가능함</p>	<p>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불법집회로 체포 가능</p> <p>○ 집회시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영국 정부는 The Police, Crime, Sentencing and Courts Bill을 입법을 추진하여 집회의 시작 및 종료시간 제한, 소음 제한, 1인 시위 제한 등 예정(의회 심의 중)</p>
프랑스	<p>○ 1인 시위 또는 다수인이 참여하는 집회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모든 집회는 자유)</p> <p>○ 단 공공장소에서 집회, 시위 및 행진은 경찰청, 또는 시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함.</p>	<p>○ 1인 시위 및 집회 가능</p> <p>○ 단, 파리 등의 경우 경찰청장은 집회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 및 시위 장소의 변경을 권고하고, 주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내치안법」 L.211-4조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p>	<p>○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된 집회 개최, 또는 사전신고 허위작성의 경우 최대 금고 6개월 및 벌금 7500유로 처벌</p>
독일	<p>○ 「독일연방공화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각 연방주의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령 및 기본법 제8조에 의거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집회 및 시위(1인 시위 포함) 보장</p> <p>- 2인 이상 모이는 것을 집회라고 하며, 옥외집회는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나 장소 및 외국공관 인접거리에 대한 제약은 없음.</p>	<p>○ 1인 시위 및 집회 가능</p> <p>○ 집회시위법 제15조에 따라,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은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 가능</p> <p>※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경찰서는 공관의 평온 또는 존엄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실시</p>	-